

【 4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3. 2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864호, '98.8.11)이 개정되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 업무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위탁됨에 따라.
- 상급기관의 업무 관리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의 업무소관 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코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과의 업무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 · 단속”을 삭제함.

(안 계4조 제2항 제6호 “더”목)

나. 문화공보실의 업무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 · 단속”을 신설함.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어”목)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유기장에 대한 허가 단속.

같은조 제2항 제6호 “며”목중 “유기장”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과의 설치)		제4조(실과의 설치)		
①~②.(생 략)		①~②.(현행과 같음)		
1.(생 략)		1.(현행과 같음)		
2.문화공보실장		2. - - - - -		
가~서.(생 략)		가~서.(현행과 같음)		
(신 설)		<u>어.유기장에 대한 허가·단속</u>		
3~5.(생 략)		3~5.(현행과 같음)		
6.사회복지과장		6. - - - - -		
가~러.(생 략)		가~러.(현행과 같음)		
며.집객업, 유통업, <u>유기장에 대한 허가</u> · 단속		며.- - - - - - - - - (삭제) - - - - - - - -		
국 ~ 국.(생 략)		국 ~ 어.(현행과 같음)		
7~13.(생 략)		7~13.(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인)

1998년 8월 11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

① 대통령령 제15,86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공무의 형성, 행정사무의 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이의 법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을 말한다.
-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위탁의 기준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징계에 부쳐야 하는 사무(

위가 당해 체신청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5. 조기면서체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신문지선·
공의시설설치 용도로의 조기전용허가 주취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전파연구소장·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
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화에 대한 외국의 우정
청과의 장관 및 철제·나만·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
한다.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4.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재한처분 및 통보

제34조(보건복지부소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기록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
격의 고시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표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
장의 표시기준의 고시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작성·보급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에 관한
업무

사.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등
에 관한 업무

2. 약사법 제43조에 의한 대한약전 제·개정 및 공고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4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
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개선증 공식률 및 기계기구(대상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2.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차문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간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입부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입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

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예방을 위한 시설요양소의 설치인가

2.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출의 승인

3.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1. 외국인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용품의 매매·교환의 허가

5. 예산회계법 제59조·제61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복지부소관 국가사업·세금에 관한 사무를 관掌하는 세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관여하는 관직의 자정

6. 법률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볍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7. 결핵예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방지의 설립·회장권고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위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담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법인 등 모자조성, 회생장 및 담률당설치 또는 니화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민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11. 초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전용·중·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초기전용에 대한 추천

6. 보건복지부장관은 헌법이 성개별원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임명제정과 부원장 및 검사의 임명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 및 임무의 조정·감독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권고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외부

6.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인분의 감소증인 및 기금관리·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증인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위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일정 중 수신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묘·기름·숙성·간조 또는 염장한 수선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9)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기장업종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제한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국에 걸친 유기장영업의 제한
3. 법 제12조제2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4.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보통유기기구의 부분품 검사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영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유기장영업소 출입·검사
6.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영업자에 대한 지도·명령
7. 법 제3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의 관리단체의 설립인가 및 단체의 정관변경인가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의 관리단체에 대한 서장명령

정관의 변경, 단체의 인가취소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9.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암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10. 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암에 대한 해당 검진·검사업무의 위생교육에 대한 관계전문기관 및 단체에의 위탁

제37조(식품이 가공된 것과 같은 식품의 가공인 것)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와 수리 및 검사. 다만, 수산동식품(식품점가문이나 다른 일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전면·기밀·숙성·건조 또는 입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와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병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청

2.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제조업체가 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체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환약제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약기·의약기기·의약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화장품수입증명허가 및 그 변경허가

3. 약사법 제29조제1항·제3항 또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화학제제의 제조(수입)관리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

4. 약사법 제29조제1항 대지·제3항 또는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리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위기의 품·폐기 등 신고의 수리

6.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업무

7.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고압가스 및 환약제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하기·승인 및 품목·제조·수입·판매 및 수입금지, 일부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8. 비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증인 마약의 차분 승인

9. 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마약의 처리

10. 마약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 중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한 마약수수의 허가
11.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의 접수
12.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13.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4. 마약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비약의 처분
1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증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폐업등의 신고의 수리
1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고의 접수
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거 등에 관한 업무
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20.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21.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 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의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중 공장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22.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별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 (2)식품의약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리업무 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제36조(환경부소관)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의 경우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의 협의(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1.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항만의 항만구역과 하천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 고시와 매립에 관한 처분
3. 법 제3조의2 및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行政權限의委任및委託에관한規程改正理由

行政의 現地性과 直을성을 높이기 위하여 中央行政機關의 認許可 등 對民關聯業務 및 地域의 事務를 一線機關인 地方自治團體 또는 特別地方行政機關에 委任하고, 政府機能중 民間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事務를 民間機關·團體로 委託하며, 이미 委任·委託된 事務중 개선이 필요한 事務를 합리적으로 調整하는 한편,

政府組織改編을 위한 政府組織法의 改正(1998. 2. 28, 法律 第5529號)으로 많은 中央行政機關의 명칭이 변경되고 그 機能이調整됨에 따라 관련 規定을 이에 맞추어 整備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國有財產法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用 國有財產의 사용收益許可에 관한 農林部授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委任하는 등 45개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함(令 第

29條第1項第4號아목 등).

- 나. 輸出品品質向上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輸出品檢査機關의 지정·公告 및 資金補助에 관한 產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을 小企業廳長에게 委任하는 등 38개 事務署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함(令 第32條第2項第1號 등).
- 다.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한 遊技場業 關聯團體의 設立認可 및 定款變更認可에 관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委託하는 등 11개 事務를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함(令 第34條第9項第7號 등).
- 라. 公認勞務士法의 規定에 의한 公認勞務士 資格試驗의 관리에 관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을 韓國產業人力公團理事長에게 委託하는 등 7개 事務를 民間機關·團體에 委託함(令 第50條第3號 등).

<별첨자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징계령증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1998년 8월 11일

국무총리
서 김종필

국무위원
교육부장관 이해찬

○대통령령 제15,865호

교육공무원징계령증개정령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864호, '98. 8.11)이 개정되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업무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위탁됨에 따라
- 상급기관의 업무 관리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의 업무소관 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단속”을 삭제함.
(안 제4조 제2항 제6호 “며”목).
- 나. 문화공보실의 업무 중 “유기장에 대한 허가·단속”을 신설함.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어”목).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9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